

제2999호
2023. 5.17.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전화 : 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규 칙]

제76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2

제769호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16

[훈 령]

제183호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 65

● **고 시**

제2023-33호 :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72

● **공 고**

제2023-479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알림 및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3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68호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경로당의 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남·녀 노인으로 한다.

제3조(시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정원 20명 이상

- 2.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 3.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제4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은 구립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경로당에는 회장 1명과 몇 명의 부회장(여성 부회장 1명 포함),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65세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경로당 관할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회장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임원이 재임 중 다른 구·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임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6조(임원 등의 선출 및 등록)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② 선출된 회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 회의록, 이력서, 명함판사진 각 1매를 첨부하여 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 4년,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관할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등의 임무) ① 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며 경로당 운영의 전체적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한다.

④ 감사는 경로당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다.

⑤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경로당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9조(이용시간) 경로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 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승인하에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제10조(운영재원) 경로당 운영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등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구립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 시설 중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운영비, 전기료, 난방비 등이며, 구청장이 경로당에 지급한다.

③ 경로당 운영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경로당에 지급한다.

④ 구가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 지원 및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공사는 구립 시설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에 한해 사립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부의 비치관리) 경로당 회장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정리해 두어야 한다.

- 1.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소유증명서
- 3. 시설운영(교육일지)

- 4. 이용노인회원명부
- 5.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 6.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7.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문서철

제13조(금지사항) 경로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숙박
- 2. 영업,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행위
- 3. 음주, 고성방가행위
- 4. 개인 재산 및 물품의 보관
- 5.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4조(회원관리) ① 경로당 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가입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와 가장 근접한 경로당(행정동 등 최소 행정 단위 기준)에 가입신청하여 월 회비 등을 납부하는 사람
- 2. 특별회원은 거주지 및 연령에 관계없이 경로당 활동에 참여하고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결의를 받은 사람

제15조(운영의 공개) 회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2. 회원 5인 이상이 경로당 운영에 관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는 매 분기 말에 모든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활성화) 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적극 시행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 1. 노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적극 참여 유도
- 2.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효 사상 고취
- 3.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
- 4. 노인공동작업장 확대 실시
- 5. 경로당 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
- 6. 1개 경로당 1개 사업 갖기 추진

제17조(행정업무수행) 회장은 행정기관의 자료 요구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고, 행정기관의 자료 요구 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간섭 배제) 경로당 미가입자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경로당 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발적으로 경로당에 도움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기득권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유지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뢰·실시해 이용 노인들의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한다.

② 경로당의 회장은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경로당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수입금 집행 및 정산

제20조(수입금 구분 및 관리)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수입과 자체 수입으로 구분한다.

- 1. 보조금 수입(경로당 운영보조금 등)
- 2. 자체 수입(회비 수입, 후원금 수입 등)

② 보조금 수입과 자체 수입은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하며, 별도의 통장을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 및 정산) ① 보조금 수입의 투명한 지출관리를 위해 회장은 보조금 수입관리 계좌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지출 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②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 1. 정산의 의의: 월, 분기, 연 등 일정한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고 해당 기간의 말기시점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
- 2. 회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3호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양식(별지 제1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한다.
- 3. 경로당 보조금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남은 보조금 금액은 이자수입과 함께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평가 및 상벌

제22조(운영평가)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운영평가 결과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행사 등에서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하여 표창·격려할 수 있다.

제23조(상벌규정) ① 경로당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나 경로당의 내분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 구청장은 경로당 회장과 임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위반시에는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비 지원 중단 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영보조금 감액 및 지원중지 기준

연번	위 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1	보조금의 사용범위 외 사용 시	사용금액 차감	
2	보조금의 현금사용 기준 초과 사용 시	초과 사용금액 차감	
3	경로당 회원가입을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신규 회원을 배척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운영비 1/2 감액	
4	운영보조금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불이행 시	운영비 1/2 감액	
5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1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1/4 감액	
6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2~4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1/3 감액	
7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5~7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1/2 감액	
8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8개월 넘게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미지급 (분란 해소 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

경로당명 : (전화번호)

정산내역

구 분	이 월 액 (가)	수 령 액 (나)	지 출 액 (다)	잔 액 (라)	비 고
계					
월					
월					
월					

※ “3월 잔액 = 4월 이월액” 으로 작성

※ (가 + 나 - 다) = 라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 경로당 회장 (인)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출결의서

	사용자	총 무	부 회 장	회 장
지출일자				
지 출 액				
지출내용				
(지출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5호서식]

비 품 (시 설) 대 장

물품명	제품명	용량	수량	구입일시	구입처	구입자	A/S 연락

[별지 제6호서식]

경로당 회원 명단

경로당명	회원명	주 소	생년월일	회 원 가입일	연락처	비고

[별지 제7호서식]

경로당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경로당 명	최초설립일	경로당 개원에 관한 기재사항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경로당 시설운영(교육일지)

경로당명	교육 및 행사일시	행사(교육) 내용	비고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경로당 운영 규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로당의 시설 기준 규정 신설 (제3조)
- 회장 중임횟수 제한 및 임기 연장 규정 변경(제7조)
- 경로당 운영시간 현실화 (제9조)
- 물품 및 개·보수 대상 규정 기준 정립 (제11조)
- 경로당 내의 금지사항 구체화 (제13조)
- 회원의 구분 및 정의 규정 신설 (제14조)
- 운영 공개 조건 사항 세분화 및 구체화 (제15조)
-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규정 신설 (제17조)
- 경로당에 대한 외부간접 배제 규정 신설 (제18조)
- 수입금 관리, 지출, 정산 규정 구체화 및 신설 (제20조, 제21조)
- 운영평가 및 상벌규정 세분화 및 구체화 (제22조, 23조)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69호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 준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여러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 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 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동행정지원팀장”을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담당관·과별로, 의회사무과”를 “담당관·과별로”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여비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청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청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각각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률고문을”을 “법률고문은”으로 한다.

제4조의 2를 제4조의2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제4조제2항 중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편 지방의회
2. 제2편 감사
3. 제3편 홍보
4. 제4편 행정관리
5. 제5편 기획재정
6. 제6편 복지환경
7. 제7편 도시관리
8. 제8편 안전건설교통
9. 제9편 보건소
10. 제10편 동행정

제43조 앞에 “제1편 구 의 회”를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2편 감사”를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3편 생활안전”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4편 시민친화”를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5편 생활복지친화”를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6편 생활도시친화”를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7편 경제친화”를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8편 행정지원”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9편 보건소”를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10편 동행정”을 삭제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과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조정과”를 “소송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조정과”를 “소송총괄부서”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국·소장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생활안전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시민친화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4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의 물품관리총괄관(보조총괄관)란 중 “경제친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친화국장, 행정지원국장, 생활도시친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80세”를 “80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만 80세”를 “80세”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장애인 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 고용 및 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를 (“환경공무원 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미화원의”를 “환경공무원의”로,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를 “환경공무원 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미화원대표”를 “환경공무

관대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업무상”을 “환경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업무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된”을 “환경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된”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환경공무원으로 취업”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환경미화원 준수사항”을 “환경공무원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미화원의 의무”)를 “(환경공무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미화원 관리”를 “환경공무원 관리”로, “환경미화원의”를 “환경공무원의”로,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를 “환경공무원 기록카드”로 한다.

제23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로환경미화원, 동배치환경미화원”을 “가로환경공무원, 동배치환경공무원”으로, “환경미화원의”를 “환경공무원의”로, “재활용처리장환경미화원”을 “재활용처리장환경공무원”으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환경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 중 “환경미화원 대표”를 “환경공무원 대표”로, “환경미화원을”을 “환경공무원을”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0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3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4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미화원의 휴식”을 “환경공무원의 휴식”으로, “환경미화원의 시설”을 “환경공무원의 시설”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법정전염병, 정신병”을 “감염병, 정신질환 및”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한 한다”를 “제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법정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이”를 “감염병이”로 한다.

제56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58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 중 “환경미화원에게”를 “환경공무원에게”로, “환경미화원을”을 “환경공무원을”로 한다.

제62조 중 “여자환경미화원”을 “여성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자 환경미화원”을 “여성 환경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자환경미화원의 정년”을 “여성환경공무원의 정년”으로, “여자환경미화원의 혼인”을 “여성환경공무원의 혼인”으로 한다.

제64조 중 “동료환경미화원”을 “동료환경공무원”으로, “환경미화원에게”를 “환경공무원에게”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69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제9조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미화원 자녀에게”를 “환경공무원 자녀에게”로, “환경미화원 자녀신상변동신고서”를 “환경공무원 자녀신상변동신고서”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중구 보안등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보안등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광원종류	용량	광속	비고
메탈할라이드 램프	50 ~ 150w	6,500lm 이상	
고압나트륨 램프	50 ~ 150w	3,000lm 이상	
LED 램프	25 ~ 100w	광효율 80lm/w 이상	

제10조제1호 본문 중 “(시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른다.

제11조제1호 중 “(LED, 세라믹 램프)”를 “(LED)”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부터 제37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도심재생과장, 건축과장, 생활안전담당관”을 “도심정비과장, 건축과장,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5조제1항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행정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축,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운송용조종사)	산업기사(유통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차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열사, 전자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정정비사

직렬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을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 <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을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 <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업 (가)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학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입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입산가공, 농화학, 조정, 시설원예)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입엽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농화학, 조정)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입엽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조정)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직렬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 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 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선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약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건강간호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 정신건강간호사2급)
보 건 진 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정,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정,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정,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정, 지적, 지적기능, 교통)

직렬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자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1급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사, 오물처리사2급
시설관리		기술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직렬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자기기)	기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자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작, 배관)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작,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학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택형태 운영 선택직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 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정,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정,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주 : 단,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동 주민센터(주민복지팀)"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구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계,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 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학류관리, 전자계산조작용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도시계획,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해양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직렬	연 구 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정,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입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정,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입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업,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12

주 :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p> <p>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p> <p>제8조(준용규정)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p>「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p> <p>제1조(목적) --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p> <p>2.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19세 ----- -----, 19세 ----- -----.</p> <p>2.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총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생 략)</p> <p>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적용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총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10조(위탁의 취소 등)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p>「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p>	<p>「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p>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팀장, 동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관분야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생 략) 제34조(점검) ① (생 략)	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자치행정팀장</u> ----- -----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점검)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수입에 대하여 매월 1회 징수결의를 거친다. 1. 동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3. (생 략) ② (생 략) 제14조(경비의 집행) ①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 ----- ----- 1.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비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정한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 설> 제14조(다른법령의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4조(다른법령의준용)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 ----- ----- ----- -----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 ----- ----- -----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3. 4. (생 략) 제26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과별로, 의회사무과,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③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인사담당관)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4. (현행과 같음) 제26조(근무부서 배치) ① ----- ----- 담당관·과별로----- -----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여비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 -----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③ (생 략)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 -----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안의 접수 등) ① (생 략)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기획조정과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채택된 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안의 접수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 ----- ② ----- ----- -----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2조(직무) ①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2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②법률고문을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중구를 포함한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p> <p>제4조의 2(임기) ①·② (생략)</p>	<p>②법률고문은 ----- ----- ----- ----- ----- -----.</p> <p>제4조의2(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입법예고 등) ① (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 관계 기관과의 협조, 의견제출, 의견의 분석처리 및 공개청문 등에 관하여「<u>법제업무 운영규정</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 ⑤ (생략)</p> <p>제14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승인을 필요로 하지않는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2조(자치법규집의 편찬간행) ①·② (생략)</p> <p>③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직제와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자치법규의 입법절차</p> <p>제4조(입법예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지방자치법」 제35조-- ----- ----- -----.</p> <p>제42조(자치법규집의 편찬간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편 구 의 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편 감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3편 생활안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제4편 시민친화</p> <p style="text-align: center;">제5편 생활복지친화</p> <p style="text-align: center;">제6편 생활도시친화</p> <p style="text-align: center;">제7편 경제친화</p> <p style="text-align: center;">제8편 행정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제9편 보건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편 동행정</p>	<p>1. 제1편 지방의회</p> <p>2. 제2편 감사</p> <p>3. 제3편 홍보</p> <p>4. 제4편 행정관리</p> <p>5. 제5편 기획재정</p> <p>6. 제6편 복지환경</p> <p>7. 제7편 도시관리</p> <p>8. 제8편 안전건설교통</p> <p>9. 제9편 보건소</p> <p>10. 제10편 동행정</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p>	<p>「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p>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차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등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 ----- ----- ----- ----- ----- ----- ----- ----- -----
제7조(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청장에게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합의) ① ----- ----- 기획재정국장----- ----- -----
② 구청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지원국장과 기획조정과장, 다른 국·소, 담당관,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소장, 담당관,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 --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 ----- ----- ----- ----- -----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3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생략)	제23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 소관의 사건은 기획조정과 세출예산(배상금 등)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의 사건 및 기획조정과의 해당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확보하여 집행한다.	② ----- ----- 소송총괄부서의 ----- -----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 ----- ----- -----
1. 시민친화국·생활복지친화국·생활도시친화국·경제친화국장·보건소장	1. 각 국·소장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기) ① (생략)	제7조(임기) (현행 제1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③기금 운용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한다. 단,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심의회 의 구성) ① (생 략)</p> <p>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경제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 생활도시친화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③----- 행정관리국장----- ----- ----- -----.</p> <p>제4조(기금심의회 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 기획예산과장----- -----.</p> <p>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p> <p>제3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플라자의 직원 중 관장, 교육훈련 및 정보화 담당자, 취업 관련 상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p> <p>1. (생 략)</p> <p>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p> <p>가. (생 략)</p> <p>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3.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p> <p>제3조(직원의 자격요건)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p> <p>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p>	<p>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p>
<p>「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65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장애인가·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을 말한다.</p> <p>제3조(지원기준) (생 략)</p> <p>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p> <p>1.·2. (생 략)</p> <p>3. 그 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급여의 중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준용</p> <p>②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2조(지원대상자) ----- ----- 65세 ----- ----- -----.</p> <p>제3조(지원기준) ① ~ ③ (현행 제3조부터 제2항까지와 같음)</p> <p>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p> <p>②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p> <p>제4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생 략)</p> <p>②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p> <p>제5조(지급액 및 시기) ① (생 략)</p> <p>②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시기는 만 80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25일에 지급한다.</p> <p>③ (생 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80세 ----- -----.</p> <p>제4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p> <p>제5조(지급액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80세 ----- -----.</p> <p>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p> <p>제6조(기금관리장부) 조례 제12조3항에 따른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p> <p>제6조(기금관리장부) ---- 제12조제3항----- -----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준용) -----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p>「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p>	<p>「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p>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량제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은 무주택 세입자 또는 재산세액 2,000원 미만 주택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 2. (생 략)</p> <p>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대상자</p> <p>4. · 5. (생 략)</p>	<p>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p> <p>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 개정 2013.08.28., 개정 2019. 5.31.)	제9조의2(과태료 감경)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 ----- ----- ----- ----- ----- ----- -----
제11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 4. (생략) ⑥ (생략)	제11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u>환경공무원</u> ----- ----- 2.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조(목적) ----- <u>환경공무원</u> ----- -----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변소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u>환경공무원</u> ”----- ----- ----- -----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u>환경공무원</u> ----- ----- -----
제4조(균등대우) 환경미화원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균등대우) <u>환경공무원</u> ----- -----
제5조(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3. (생략)	제5조(환경공무원 관리위원회) ① <u>환경공무원의</u> ----- <u>환경공무원 관리위원회</u> ----- ----- ② ----- ----- 1. <u>환경공무원</u> ----- 2. <u>환경공무원</u> ----- 3.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등) ① (생략)	제6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u>환경미화원</u> 대표 1명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u>환경미화원대표</u>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고충 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예방 업무를 위하여 비 작업요원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u>환경미화원</u>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u>환경미화원</u>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2. ~ 7. (생 략)</p> <p>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u>환경미화원</u>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u>환경미화원</u>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p> <p>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u>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1. 2. (생 략)</p>	<p>② ----- ----- ----- <u>환경공무원</u> ----- ----- -----, <u>환경공무원대표</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자격기준) ① ----- <u>환경공무원</u>----- ----- ----- -----.</p> <p>1. ----- <u>환경공무원</u>----- -----</p> <p>2. ~ 7.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환경공무원</u>----- -----.</p> <p>제8조(모집공고) ----- <u>환경공무원</u>----- ----- -----.</p> <p>1.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제출서류) <u>환경미화원</u>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제10조(고용 우선 순위) ①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u>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신체요건이 <u>환경미화원</u>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p> <p>3. 그 밖에 <u>환경미화원</u>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p>② <u>환경미화원</u>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된 자와 <u>환경미화원</u>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된 자의 가족이 <u>환경미화원</u>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 고용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p> <p>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p> <p>1. <u>환경미화원</u>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p>	<p>제9조(제출서류) <u>환경공무원</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고용 우선 순위) ① ----- <u>환경공무원</u>-----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환경공무원</u>----- -----</p> <p>3. ----- <u>환경공무원</u>----- -----</p> <p>② <u>환경공무원</u>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 ----- <u>환경공무원</u>----- ----- <u>환경공무원</u>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된 ----- <u>환경공무원</u>으로 취업----- -----.</p> <p>제12조(고용의 해지) ----- <u>환경공무원</u>----- ----- -----.</p> <p>1. <u>환경공무원</u> ----- -----</p>

현 행	개 정 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3조(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제13조(퇴직사유) ----- 환경공무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 ①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 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 ① 환경공무원----- -----.
②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 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그 해 12월말로 한다.	② 환경공무원----- -----.
제4장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제4장 환경공무원 준수사항
제15조(환경미화원의 의무) ① 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공무원의 의무) ① 환경공무원----- -----.
②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공무원----- -----.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공무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주민제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제도) 환경공무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금지행위) 환경공무원-----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 ① 환경미화원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으로써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 환경공무원----- -----.
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 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환경공무원----- -----.
제20조(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복장) 환경공무원----- -----.
제21조(결근 신고 등) ① 환경미화원은 질병·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결근 신고 등) ① 환경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공무원----- -----.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록카드) <u>환경미화원 관리</u> 부서장은 <u>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u> 을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카드) <u>환경공무원 관리</u> ----- <u>환경공무원의</u> ----- <u>환경공무원 기록카드</u> -----.
제23조(근무상황부) 소속 부서장은 <u>환경미화원</u> 근무상황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작성 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상황부) ----- <u>환경공무원</u> -----.
제24조(교육)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4조(교육) ----- <u>환경공무원</u> -----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u>환경미화원</u> 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모든 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증명서 발급) ----- <u>환경공무원</u> -----.
제27조(사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 ① <u>가로환경미화원, 동배치환경미화원, 재활용품·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u>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u>재활용처리장환경미화원</u> 등 그 밖에 <u>환경미화원</u> 근무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한다. 1.·2. (생 략)	제27조(사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 ① <u>가로환경공무원, 동배치환경공무원</u> ----- <u>환경공무원의</u> ----- <u>재활용처리장환경공무원</u> ----- <u>환경공무원 근무시간</u>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u>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u> 등을 조정하거나 안전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 ----- <u>환경공무원</u> ----- -----.
③ <u>환경미화원</u> 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③ <u>환경공무원</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비상출근 명령) <u>환경미화원</u> 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비상출근 명령) <u>환경공무원</u> ----- ----- -----.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u>환경미화원</u> 이 선거 그 밖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u>환경공무원</u>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향토예비군설치법</u> 」 및 「 <u>민방위기본법</u> 」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준다.	④「 <u>예비군법</u> 」 ----- -----.
⑤ 전 항의 경우로 훈련에 참가하는 <u>환경미화원</u> 은 소집일 3일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 참가필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u>환경공무원</u> ----- -----.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미화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6조(유급휴가의 대체) ----- 환경공무원 대표----- ----- 환경공무관을 -----.
제37조(휴직 사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휴직 사유) 환경공무원-----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39조(휴직자 신분) ① 휴직된 자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휴직자 신분) ① ----- 환경공무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차용물의 반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0조(차용물의 반환) 환경공무원----- -----.
제41조(징계) ①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41조(징계) ① 환경공무원 -----.
② 별표 1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미화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 ----- 환경공무원----- -----.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모든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정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 ----- 환경공무원 ----- -----.
제44조(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환경미화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임금대장) ----- ----- 환경공무원----- -----.
제46조(임금지급 방법) 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환경미화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46조(임금지급 방법) ① ----- ----- 환경공무원-----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비상시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비상시 지급) ① ----- ----- 환경공무원----- -----.
1. 환경미화원의 사망	1. 환경공무원-----
2. 환경미화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2. 환경공무원 ----- -----
3. 환경미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3. 환경공무원-----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안전보건)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및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안전보건) 환경공무원----- -----.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재해예방 및 휴게실) ①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의 재해방지를 위해</u> 항시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재해예방 및 휴게실) ① ----- <u>환경공무원</u> -----.
② <u>환경미화원은</u> 청소작업 시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u>환경공무원</u> -----.
③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의 휴식을 위해</u> 지역실정에 맞는 휴게실을 설치토록 노력하며 <u>환경미화원의 시설</u> (온수, 전기, 난방기구 및 기타)에 대한 수리 요구 시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③ ----- <u>환경공무원의 휴식</u> ----- <u>환경공무원의 시설</u> -----.
제51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u>환경미화원은</u>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u>환경공무원</u>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2조(비상재해) ① <u>환경미화원은</u>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비상재해) ① <u>환경공무원</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보건대책) <u>환경미화원은</u> 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 및 담당 공무원의 지시 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53조(보건대책) <u>환경공무원</u> -----.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건강진단) ① <u>환경미화원은</u> 채용 시와 채용된 후 연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건강진단) ① <u>환경공무원</u> -----.
② <u>환경미화원은</u>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② <u>환경공무원</u> -----.
제55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u>법정전염병, 정신병</u> 그 밖의 「 <u>산업안전보건법령</u> 」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 한다.	제55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u>감염병, 정신질환</u> 및 「 <u>산업안전보건법</u> 」----- <u>제한한다.</u>
② <u>환경미화원과</u>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의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u>환경공무원</u> ----- <u>감염병</u> ----- <u>감염병의</u> -----.
제56조(보고) <u>환경미화원은</u>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보고) <u>환경공무원</u> ----- <u>감염병</u> -----.
제57조(재해보상) ① <u>환경미화원이</u>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u>근로기준법</u> 」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을 한다.	제57조(재해보상) <u>환경공무원</u> -----.

현 행	개 정 안
제58조(휴업보상, 장애보상의 예외) <u>환경미화원이</u>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u>의</u>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애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8조(휴업보상, 장애보상의 예외) <u>환경공무원</u> ----- ----- ----- ----- -----.
제61조(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u>환경미화원에게</u>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u> 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구상권 행사) ----- ----- <u>환경공무원에게</u> ----- ----- <u>환경공무관을</u> ----- -----.
제62조(기본원칙) 구청장은 <u>여자환경미화원</u> 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 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62조(기본원칙) ----- <u>여성환경공무원</u> ----- ----- -----.
제63조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u> 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u>여자 환경미화원</u> 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u>여자환경미화원</u> 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u>여자환경미화원</u> 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63조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 <u>환경공무원</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여성 환경공무원</u> ----- -----. ④ ----- <u>여성환경공무원의 정년</u> ----- ----- ----- <u>여성환경공무원의 혼인</u> ----- ----- -----.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성희롱 금지)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환경미화원이 직장내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u>환경미화원</u> 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성희롱 금지) ----- <u>동료환경공무원</u> ----- ----- <u>환경공무원에게</u> ----- ----- -----.
제65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구청장은 <u>환경미화원</u> 을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부서전환,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하여야 하며, 피해 <u>환경미화원</u>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 <u>환경공무원</u> ----- -----. ----- ----- ② ----- ----- ----- <u>환경공무원</u> ----- -----.
제68조(규칙의 효력) ①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u>환경미화원</u> 에게도 본 효력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68조(규칙의 효력) ① ----- <u>환경공무원</u> -----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규칙의 게시) 이 규칙은 구청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u>환경미화원</u>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규칙의 게시) ----- ----- <u>환경공무원</u>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

현 행	개 정 안
<p>1.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금</p> <p>2. 3. (생 략)</p> <p>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p>○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p> <p>○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p> <p>제9조(지출) ① (생 략)</p> <p>②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 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졸업·휴학·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 자녀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기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2. 3. (현행과 같음)</p> <p>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p>○기금운용관 -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p> <p>○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p> <p>제9조(지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환경공무원-----</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신상변동신고) ----- 환경공무원 자녀에게 ----- 환경공무원 자녀신상변동신고서-----</p> <p>제15조(회계준용)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서울특별시 중구 보안등 관리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보안등 관리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광원의 종류) (생 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광원종류</th> <th>용량</th> <th>광속</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메탈할라이드 램프</td> <td>50 ~ 150w</td> <td>6,500lm 이상</td> <td>LED램프는 「서울특별시 공공기</td> </tr> <tr> <td>고압나트륨 램프</td> <td>50 ~ 150w</td> <td>3,000lm 이상</td> <td>관 LED조명 보</td> </tr> <tr> <td>LED 램프</td> <td>25 ~ 100w</td> <td>광효율 80lm/w 이상</td> <td>급기준」에 따른다.</td> </tr> </tbody> </table> <p>제10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1. 조사각도는 「KS C 7611 도로조명기구」(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컷오프(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수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제한하는 배광)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p> <p>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p> <p>3. ~ 6. (생 략)</p> <p>제11조(신기술 도입)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p> <p>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광원(LED, 세라믹 램프)으로 교체</p> <p>2. ~ 6. (생 략)</p>	광원종류	용량	광속	비고	메탈할라이드 램프	50 ~ 150w	6,500lm 이상	LED램프는 「서울특별시 공공기	고압나트륨 램프	50 ~ 150w	3,000lm 이상	관 LED조명 보	LED 램프	25 ~ 100w	광효율 80lm/w 이상	급기준」에 따른다.	<p>제7조(광원의 종류)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광원종류</th> <th>용량</th> <th>광속</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메탈할라이드 램프</td> <td>50 ~ 150w</td> <td>6,500lm 이상</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삭 제></td> </tr> <tr> <td>고압나트륨 램프</td> <td>50 ~ 150w</td> <td>3,000lm 이상</td> </tr> <tr> <td>LED 램프</td> <td>25 ~ 100w</td> <td>광효율 80lm/w 이상</td> </tr> </tbody> </table> <p>제10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p> <p>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p> <p>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른다.</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11조(신기술 도입) -----</p> <p>1. -----(LED)-----</p> <p>2. ~ 6. (현행과 같음)</p>	광원종류	용량	광속	비고	메탈할라이드 램프	50 ~ 150w	6,500lm 이상	<삭 제>	고압나트륨 램프	50 ~ 150w	3,000lm 이상	LED 램프	25 ~ 100w	광효율 80lm/w 이상
광원종류	용량	광속	비고																												
메탈할라이드 램프	50 ~ 150w	6,500lm 이상	LED램프는 「서울특별시 공공기																												
고압나트륨 램프	50 ~ 150w	3,000lm 이상	관 LED조명 보																												
LED 램프	25 ~ 100w	광효율 80lm/w 이상	급기준」에 따른다.																												
광원종류	용량	광속	비고																												
메탈할라이드 램프	50 ~ 150w	6,500lm 이상	<삭 제>																												
고압나트륨 램프	50 ~ 150w	3,000lm 이상																													
LED 램프	25 ~ 100w	광효율 80lm/w 이상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안등의 점검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부터 제37조에 따른다.	제17조(보안등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위원회의 위원)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전통시장과장, 도심재생과장, 건축과장,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위원회의 위원) ----- ----- 기획예산과장----- 도 심정비과장, 건축과장, 생활안전과장----- -.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준용)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행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미 수정 사례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조문) 등 정비
-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오탈자 정비

[훈 령]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83호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여러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6조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27조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디지털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정보화관리팀장”을 “전산운영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조정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조정과”를 각각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16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구 정책회의 운영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회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구 회장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회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한민국국기규정 “별표 2””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면책 심의 대상자가 7급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하며, 6급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은 국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국·과장은 제외한다.</p> <p>③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p> <p>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p> <p>제9조(인사) 운영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배치근무 인력에 대하여「청소년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임용, 승진, 승급, 정년 등의 기준을 정한다.</p> <p>제26조(계약) 청소년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7조(예산·결산·회계관리) 예산·결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p> <p>제9조(인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p> <p>제26조(계약)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p> <p>제27조(예산·결산·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p>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재산관리) ①·② (생 략)</p> <p>③청소년복지시설의 재산은「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9조(물품관리) ①·② (생 략)</p> <p>③운영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물품관리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8조(재산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p> <p>제29조(물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p>
<p>「서울특별시 중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정」</p> <p>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홍보전사과장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p> <p>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관리팀장으로 한다.</p> <p>제19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② (생 략)</p> <p>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정」</p> <p>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디지털정책과장-----</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전산운영팀장-----.</p> <p>제19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p>
<p>「서울특별시 중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p> <p>제5조(통계심사관) ①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p> <p>제5조(통계심사관)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②통계심사관은 기획조정과장이 된다.	②-----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국의여행 규정」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내의 국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② (생 략) ③간사는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여행방침 사전협의) ①주관 과장 등은 공무국의여행방침 수립시 미리 기획조정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각종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 계약에 의한 공무국의여행도 사실상 구비 부담인 점을 감안 적정 규모로 최소화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미리 기획조정과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8조(귀국보고서) ①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국의여행 규정」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관리국장-----. 제7조(위원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지원과장-----. 제10조(여행방침 사전협의) ①----- 행정지원과장-----. ②----- 행정지원과장-----.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귀국보고서) ①----- 행정지원과장-----.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삭 제 4. "예산부서"란 공무직 등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조정과를 말한다. 5. ~ 7.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2. (현행과 같음) 4. ----- 기획예산과-----. 5. ~ 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제3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2. (생 략) 3. 이행실적 평가는 기획조정과, 추진사항의 점검은 감사담당관이 한다. 제16조(홍보) 홍보전산과장은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동참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제3조(관리체계) ----- -----. 1. ----- 기획예산과-----. 2. (현행과 같음) 3. ----- 기획예산과-----. 제16조(홍보) 홍보담당관----- ----- -----.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회의 운영 규정」 제10조(실무조정회의구성) ① ~ ③ (생 략)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회의 운영 규정」 제10조(실무조정회의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안전 관련 담당관·과·동장이 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지원과장----- ----- -----.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규정」 제3조(휘장의 규격등) ① (생략) ②중구 구기는 중구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규정 "별표 2"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규정」 제3조(휘장의 규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u>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 행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미 수정 사례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조문) 등 정비
-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오타자 정비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33호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조사취지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빈집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23. 05. ~ 2023. 08.
4. 조사대상 : 중구 관내 추정 빈집 68호
5. 조사내용
 - 가. 빈집 여부 확인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나.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다.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라. 빈집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마.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 발생 사유 조사
 - 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6. 조사기관 : 중구청
7. 고시 관련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은 우리 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02-3396-5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79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알림 및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6에 따라「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공고기간: 2023. 5. 15. ~ 2023. 5. 29.(14일간)
- 2. 공고대상: 불임 참조
- 3. 공고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알림

1.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독촉하지하오니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서 빠른시일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받으시기 전 연장신청 필요(연장신청 안할시 과태료부과 대상)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신청할수 있으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예신청 조건】

- 교통안전공단 수검안내문 미수령시(연장신청 후 검사요청)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환경과(hty3458@junggu.seoul.kr)에 제출

3.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1.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륜자동차 검사소 안내

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검사소

지역	검사소명	도로명 주소	대표전화	비 고
서울	성동	성동구 가람길 113 (송정동)	02-2244-2556	평 일: 9~18시 토요일: 9~13시 ※ 토요일은 예약전만 검사
	상암	마포구 구릉길 15 (상암동)	02-309-7033	
	성산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02-306-5986	
	구로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02-2037-6000	
	강남	강남구 현릉로 745길 13 (울현동)	02-459-2844	
	노원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하계동)	02-948-4121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지역	검사소명	도로명 주소	대표전화
서울	(주)에이원모터스	성동구 광나루로 192(성수동1가)	02-463-0027
	현대오토서비스	금천구 두산로 3 (독산동)	02-858-8600
	서울모터스(양천)	양천구 목동로1길 42 (신정동)	02-2655-2055
	(주)해성자동차	성동구 아차산로 147(성수동2가)	02-465-4111
	베스트바이크(성동)	성동구 성수이로26길 25(성수동2가)	02-466-5782
	성수현대서비스	성동구 아차산로 171(성수동2가)	02-464-6464
	케이모터스(서울)	중랑구 망우로26길 49(면목동)	070-8959-5828

합성자동차취	강북구 도봉로 113(마아동)	02-903-3900
한양자동차정비취	도봉구 도봉로136다길 32(창동)	02-989-9720
명진종합오토바이	마포구 만리재로 132-2(공덕동)	02-703-9259
강서이륜차검사소	강서구 양천로 400-12(가양동)	02-6949-6934
강서자동차	강서구 양천로 372(가양동)	02-3663-4569
(주)플라잉모터스	강서구 방화대로 22(외발산동)	02-2667-0456
(주)신동성자동차	강서구 양천로 528(등촌동)	02-3663-4567
(주)문래자동차검사사업소	영등포구 문래로 31(문래동6가)	02-2679-1141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취	영등포구 선유로 103(영등동1가)	02-2633-8611
(주)영등포자동차정비검사소	영등포구 문래로 55(문래동6가)	02-2679-1230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민간(지정) 검사소에서만** 가능

(민간(지정) 검사소 사이트: www.cyberts.kr 또는 www.car365.go.kr 참고)

※ **검사예약, 검사시간, 검사비용**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소에 문의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신청서 없음)
- 의무보험영수증(또는 보험증권)
- 검사료 (검사기간 내 미수검 → 과태료 최대 20만 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알림 및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자치단체 : 서울시청/서울 중구청

2023.5.12.

No.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비고
1	경기광명파1165	전*혁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 ** ****(신당동, 에덴빌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	서울중카1299	이*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3	경남진주하9932	최*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2길 *****(남산동3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1차독촉장
4	서울중차7024	김*한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 **** **** (신당동, 신당파인힐 하나유보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5	서울중자6290	HA* *HE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다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6	서울중차1763	김*진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예장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부재	1차독촉장
7	서울중카1498	김*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소불명	1차독촉장
8	서울성북하9027	성*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9	서울성동하5697	박*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0길 **, ****(광희동1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0	서울중자7194	이*복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1	서울동대문파8319	정*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 ****(인현동2가, 신성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2	서울종로아7644	박*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나길 *****, ****(망희동2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3	서울중자7281	김*출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7길 **, ****(홍인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4	서울중사9990	성*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가길 *(필동2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1차독촉장

No.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비고
15	서울중차4996	강*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 ***** (신당동, 래미안신당하이베르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6	서울강남타7689	성*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4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7	서울중카3952	박*선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 ** *** (장충동1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8	대전서나2946	박*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19	제주제주나9648	이*하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0	서울중자7947	장*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나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1	서울중카3572	문*무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0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2	서울강남타7505	백*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 ***** (신당동, 래미안신당하이베르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3	서울용산차1270	이*하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자길 ***** (신당동, 신신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4	서울중자8816	박*석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 ****(황학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5	서울성동하5525	강*성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 ***** (신당동, 신당파인힐 하나유보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6	서울중자8985	ZHE** ***YU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7	서울중타2426	송*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35길 ****(만리동1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8	서울성동하4111	김*셉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5길 ***** (황학동, 청계휴먼타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9	서울중카9196	이*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30	서울중카1747	박*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2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소불명	1차독촉장

No.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비고
31	경기광명타2611	김*주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 ***** (신당동, 신당파인힐 하나유보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32	서울중카5698	MAI ***** LONG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0길 **, ** (장충동1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33	서울성동하4500	김*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0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소불명	1차독촉장
34	서울중자9923	김*출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7길 **, ***(홍인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35	서울강남파3696	전*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6길 **, **** ***(홍인동,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36	서울중타2795	김*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2차독촉장
37	서울중카7510	김*환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4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38	서울중카2620	김*연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3길 **(황학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39	서울성동하4875	장*훈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6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40	서울강북파1046	이*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 ***** (황학동, 황학 아크로타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41	서울중카9163	윤*복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42	서울마포카1932	성*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43	서울중타4087	김*성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4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소불명	2차독촉장
44	서울중카5538	임*섭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명령
45	서울중차3158	김*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명령